

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(유가물)공고

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02.18.

제 주 우 편 집 중 국 장

1.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 내역

종 별	접수일 혹은 최초발견일	내용품	수량	등기번호	발송인	수취인	비고
이탈품	2016.01.18.	아웃도어 전용 포터블 안테나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이탈품	2016.02.03.	한라봉 10kg	1	불명	불명	불명	매각
이탈품	2016.02.03.	쌀 20kg	1	불명	불명	불명	매각
이탈품	2016.02.03.	스팸선물세트 5kg	1	불명	불명	불명	매각
이탈품	2016.02.03.	쿠션 1.3kg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이탈품	2015.11.16.	롯데카드	1	불명	불명	불명	보관
유가물	2015.11.12.	hockey jersey (하키복 상의)	1	RA1502081529KR	Am* sigsw****	Ja* moha****	보관

2. 청구기간 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, 환부청구가 없을시 국고에 귀속됨.

3. 문의사항 : 제주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회계계(☎710-5207~8)

※ 참고사항

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 있는 것(예: 골, 생선 등 부패성우려) 또는 보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되,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합니다. 매각대금은 당해 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며, 부패성 우려가 있는 우편물 중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